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074

제출연월일: 2017. 2. 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옥수동 외에도 금호2-3가동, 금호4가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의 일체성을 위한 경계조정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옥수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내 금호동 필지를 옥수동으로 편입

- 금호동3가 1351번지 144 외 153필지를 옥수동으로 편입
- 금호동4가 1472번지 2 외 30필지를 옥수동으로 편입

옥수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			
변경 전	금호동3가 1351번지 144 외 153필지	금호동4가 1472번지 2 외 30필지	
변경 후	옥수동 567번지 외 153필지	옥수동 567번지 154 외 30필지	

나. [개정연혁표 5]을 신설함

- ① 금호동3가(금호2-3가동) 관할구역 중 1351번지 144 외 153필지를 옥수동(옥수동) 567번지 외 153필지로 편입하고 금호동3가(금호2-3가동)에서 제외한다.
- ② 금호동4가(금호4가동) 관할구역 중 1472번지 2 외 30필지를 옥수동(옥수동) 567번지 154 외 30필지로 편입하고 금호동4가(금호4가동)에서 제외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「지방자치법」제4조의2
- 2) 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제9조의2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'16. 12. 29. ~ '17. 1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 · 구조문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개정연혁표 5]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[개정연혁표 5]
- ① 금호동3가(금호2-3가동) 관할구역 중 1351번지 144 외 153필지를 옥수동(옥수동) 567번지 외 153필지로 편입하고 금호동3가(금호2-3가동)에서 제외한다.
- ② 금호동4가(금호4가동) 관할구역 중 1472번지 2 외 30필지를 옥수동(옥수동) 567번지 154 외 30필지로 편입하고 금호동4가(금호4가동)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[개정연혁표 5]
	①금호동3가(금호2-3가동) 관할구
	역 중 1351번지 144 외 153필지
	를 옥수동(옥수동) 567번지 외
	153필지로 편입하고 금호동3가
	(금호2-3가동)에서 제외한다.
	②금호동4가(금호4가동) 관할구역
	중 1472번지 2 외 30필지를 옥
	수동(옥수동) 567번지 154 외 30필
	지로 편입하고 금호동4가(금호4가
	동)에서 제외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 없음

4. 작성자

- 성동구 자치행정과 엄정식 (연락처 2286-5142)

< 관계법규>

□ **지방자치법**[시행 2016.11.30.] [법률 제14197호, 2014.5.29., 타법개정]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②~⑤ (생략)

[본조신설 2009.4.1.]

□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

[시행 2014.11.19.] [행정자치부령 제1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제9조의2(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)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·면·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
- 2.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
- 3. 행정구역 변경도

[전문개정 2011.7.5.]

□ 행정구역 변경대상 현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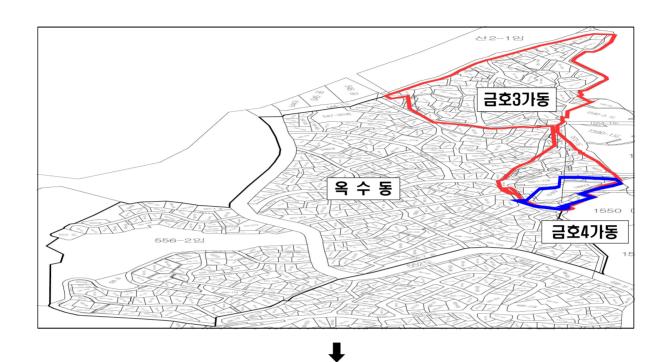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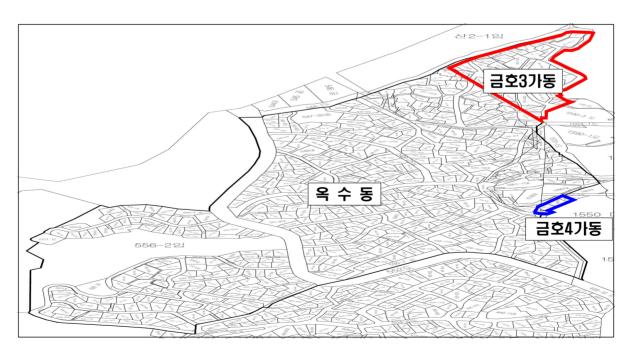


□ 행정구역 변경대상 현황도(필지)

변경 전



변경 후



-----: : 동 경계 ----: 사업구간

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17. 2. 28. 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7. 2. 14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7. 2. 17.

다. 상정일자: 2017. 2. 24.

(제23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행정관리국장

나. 제안이유

옥수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옥수동 외에도 금호2-3가동, 금호4 가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의 일체성을 위한 경계 조정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옥수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내 금호동 필지를 옥수동으로 편입

- 금호동3가 1351번지 144 외 153필지를 옥수동으로 편입
- 금호동4가 1472번지 2 외 30필지를 옥수동으로 편입

옥수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			
변경 전	금호 동 3가 1351번지 144 외 153필지	금호동4가 1472번지 2 외 30필지	
변경 후	옥수동 567번지 외 153필지	옥수동 567번지 154 외 30필지	

나. [개정연혁표 5]를 신설함

- ① 금호동3가(금호2-3가동) 관할구역 중 1351번지 144 외 153필지를 옥수동 (옥수동) 567번지 외 153필지로 편압하고 금호동3가(금호2-3가동)에서 제외한다.
- ② 금호동4가(금호4가동) 관할구역 중 1472번지 2 외 30필지를 옥수동(옥수동) 567번지 154 외 30필지로 편입하고 금호동4가(금호4가동)에서 제외한다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「지방자치법」제4조의2
- 2) 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의2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'16. 12. 29. ~ '17. 1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5.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수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아파트 단지의 일체성을 위하여 위 구역에 포함된 금호동3가 1351번지 144 외 153필지 및 금호동4가 1472번지 2 외 30필지를 옥수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안으로 판단 됨.
- 다만, 아파트 준공 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늦게 이뤄짐으로써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바, 적극적인 행정 업무 처리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.
- 6. 질의 및 답변: 회의록 참조
- **7. 토론요지:** 없음
- 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- **9. 기타 필요한 사항:** 없음